외국박사학위신고 관련 법령(시행령, 훈령) 신구대조표

□ 시행령 개정(고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)

개정 전	개정 후
제17조(외국박사학위의 신고)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(귀국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)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17조(외국박사학위의 신고)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 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. 1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: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: 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.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: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

□ 훈령 개정(교육부훈령 제421호, 2023.01.01. 개정)

개정 전	개정 후
제3조(신고기간)①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학위를 받고 귀국한 날(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)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	제3조(신고기간)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. 1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: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: 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.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: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
제4조(신고방법) 신고는 본인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.	제4조(신고방법) 신고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구축·운영하는 외국박사학위신고 종합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.
제5조(신고서류)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1. 별지 서식에 의한 신고서 1부 2. 학위증 사본(원본제시) 1부 3. 학위논문 또는 동 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 4.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	제5조(신고서류) 신고자가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학위증명서 : 학위증 사본, 학위취득 증명서,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등 2. 학위논문 : 박사학위논문 또는 동 논문이 게재된 출판물
제7조(신고필증 교부)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제5조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동 재단 이사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동 사항에 대한 관련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관리하여야 한다.	제7조(신고여부 확인)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제5조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, 동 사항에 대한 관련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관리하여야 한다.